"연간 수만 여명의 군인들이 성폭행(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방부장관님께 드리는 軍 부대 진단보고서)

현재 우리 사회는 군대내 폭력과 살인, 성추행과 성폭력 등 인권 상황이 심각 합니다. 성추행 문제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에는 경북의 모 사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강원도의 모 사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4월에는 강원도의 모 사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같은 달에는 경기중서부 전선의 모 사단에서 구타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때에도 성추행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대구의 모 사단에서 선임병에 의해 14명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선임병은 동성에 성향을 가진 병사로 알려져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2013년 9월 한국 갤럽이 한국교회언론회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의 20대·30대 군 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입니다.

1. 복무기간중 부대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인지율 동성 군인에 의한 성폭행(추행)은 5년 전에 비해 범죄 수위도 심해지고, 범죄 발생도 증가해왔음을 보여주어, 군 인사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인지율 : 응답자의 37.6%가 '보거나 들었다'고 답함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그렇다	37.6%	39.5%	31.5%	40.3%	49.5%

(2) 추세 : 5년 전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 인지율은 증가중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인지율	33.1%	36.4%

(3) 성범죄 수위 : 응답자의 31.2%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답함

군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심각했다	31.0%	34.0%	23.2%	36.7%	39.3%

(4) 범죄 수위 추세 : 5년 전부터 성범죄 수위의 심각성이 증가함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심각했다	25.7%	30.3%

2. 군인간 성폭행(성추행) 발생시 피해사실의 신고는 쉬운가?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여, 성범죄가 은폐되고,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1) 군인간 성폭행(추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쉬운가?

군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쉽다	12.7%	15.6%	10.4%	19.2%	9.8%

(2) 전역기간별 피해사실 신고 용이 정도(쉽지 않다)

전역 시기	5년~10년	5년 미만
쉽다	10.7%	17.0%

(3) 군대내 성범죄 피해사실의 신고가 쉽지 않은 이유?

사유	계급사회등 군의 특수성	불이익 우려	수치심・소문	신고환경 미흡
응답 비율	43.0%	25.0%	16.8%	6.3%

3. 군 복무자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관련 견해

20대는 교육·미디어·문화를 이용한 동성애 미화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에 관용적이지만, 군 복무중 목격을 하고 이야기를 들은 군내 성범죄 경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20대의 68.3%도 군대내 동성애 허용에 반대함

연령별	부정적이다	영향 없음	긍정적이다	모름
20대	68.3%	23.3%	3.0%	5.5%
30대	70.6%	21.3%	2.9%	5.1%

(2) 육・해・공군 전역자는 65% 이상이 군대내 동성애를 반대함

군별	부정적	영향 없음	긍정적	모름
육 군	70.7%	21.1%	3.4%	4.8%
해 군	65.7%	23.9%	2.6%	7.8%
공 군	65.0%	23.4%	2.2%	9.4%
해병대	59.4%	37.6%	0.0%	3.0%
기 타	68.7%	25.6%	0.0%	5.6%

(3) 군대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①군 기강 해이(21.0%) ②군내 성범죄 증가(10.7%) ③내무생활의 어려움(6.7%) ④군대는 연애장소가 아님(6.5%)등 이었음

4. 동성 군인간 성폭행·성추행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인가?

동성애자 이익단체는 군대내 성범죄가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 군인들에 의해일어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역자들은 군내 성범죄가 동성애(성적 취향)와관련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밝혀진, 14명 이상의 후임병을 성추행한 군인도 동성애자였습니다.

(1) 공군외 응답자의 30% 이상이 군내 성추행과 동성애가 관련있다고 답함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피해 인지율	37.6%	39.5%	31.5%	40.3%	49.5%
동성애와 연관	37.7%	31.2%	27.0%	37.6%	35.4%

(2) 군내 성추행과 동성애의 연관성에 대한 답변은 종교와 무관함

군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없음
동성애와 연관	41.1%	37.5%	35.1%	34.0%

(3) 부대내 성폭행(성추행)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①억압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생활(18.1%) ②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이 없음(17.3%) ③자 제력 부족(6.9%) ④젊은 남자끼리만 생활(6.8%) ⑤정신이상(6.4%) ⑥잘못된 성관념(5.0%) ⑦상하관계압력(5.3%) ⑧장난·호기심(4.2%) ⑨인성문제(2.8%) ⑩가혹행위(군대문화)의 일환(2.6%)순으로 답하였습니다.

- 군 복무의 구조적 원인(①,②,④)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성적 취향을 암시하는 내용(③,⑤,⑥,⑦,⑧,⑨)이 30.6%로 뒤를 이어 (1)번 답변을 지지함을 보여줍니다. 가혹행위의 일환으로서의 성범죄와 관련된 요인(⑦⑧⑨⑩)은 14.9%로

분석됩니다.

5. 동성애자들의 군형법 제92조 6(추행) 폐지 요구에 대한 전역자 의견

해병대는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 인지율도 1위임(40.3%). 이의 반작용으로 군 형법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동성 군인간 성범죄 사건 인지율 이 가장 낮기 때문에 군형법 강화의 필요성도 59.2%로 낮습니다. 각 군 공통으 로 응답자의 3명중 2명은 '군형법 제92조 6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 니다.

(1) 연령별 : 폐지에 동의하는 여론은 20대 7.8%, 30대 5.5%에 불과하다. 군복무자의 안전에 대한 욕구(인권)를 볼 수 있다.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20대	62.2%	23.6%	7.8%	6.4%
30대	65.7%	21.9%	5.5%	6.9%

(2) 군별

연령별	강화해야	현재 상태 유지	폐지해야	모름
육 군	64.7%	23.9%	5.8%	5.7%
해 군	65.6%	13.2%	8.1%	13.1%
공 군	59.2%	22.2%	9.3%	9.3%
해병대	70.3%	10.6%	0.0%	19.1%
기 타	61.4%	18.7%	12.8%	7.1%

6. 결론

- 첫째, 8월 21일 국회의 군 인권에 관한 공청회에서 임 모씨(군인권센터 소장, 전동성애자 인권연대 대표)는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에게 군대내에서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 6(추행)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자의 10명중 9명은 군형법 제92조 6(추행)의 처벌 강화 또는 현 상태 유지를 원해, 원치 않는 성적 취향(동성애 등)을 강요당하지 않을 '안전의 권리'(인권)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둘째, 전역자들은 동성애자인 선임병으로 인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후임병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임병이 되었을 때 성적 취향이 발현되어 성폭행·성추행이 발생하고, 동반 외박을 나가 성관계를 하는 경

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이익단체가 주장하는 군형법 제92조 6(추행)은 소수 동성애자의 군대내 성욕 추구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다수 군인들의 안전(인권)을 위해 폐지될 수 없습니다. 군대는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러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셋째, 군대에서 동성애에 길들여 진 후 찜방(동성애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를 지칭함)을 전전하는 삶을 수치스러워하고 AIDS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사회에서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경우도 있고, 또한 동성애를 배운 후 에이즈에 감염되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넷째, 선임병에게 성폭행(항문성교)를 당했어도 남자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고방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다섯째,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내 성추행 피해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심 각한 성추행이 3.9%(항문성교, 자위 강요, 애무 강요, 키스, 성기 만지기, 구강성교 등), 일반적 성추행이 11.5%(포옹, 신체접촉)로 나타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복무 중인 현역 병사 가운데 수만명이 광범위하 게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7. 대책

- 첫째,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가해자의 81.7%가 신병 때는 피해자로 나타 났습니다. 이는 최초에는 '피해자'이지만 성적 쾌락에 길들여지면 '합의된 관계'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처럼 대물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끊기 위해서는 군 생활 2년간 집중적인 치료와 근절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둘째, 국방부는 매년 군대내 성폭행·성추행 합의에 의한 실태조사를 외부 여론 조사기관에 맡긴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역자들은 "성범죄 적발시 군 복무를 훈련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현실적인 예방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에 국방부에「병영내 동성애자 인권보호지침」 등을 요구하며, 군대내 동성애 보장의 첨병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 넷째, 정부는 <군 복무중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보 상금을 지급하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다시는 군대 내에서 성폭행 피해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섯째, 신문·방송은 "군 부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동성애자들의 요 구를 긍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을 멈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여섯째, 훈련소의 배치받은 부대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절차와 신원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 일곱째, 병사들의 외출·외박주기를 짧게 하고 관할 구역 제한을 완화하여 영외에서 정신적·육체적·생리적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도록 해야합니다.

2014. 8. 2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 02-928-0154 <u>www.cfms.kr</u>

후원계좌 [국민 103037-04-000978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